
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1.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① 계약기간

- 1)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 갱신 및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.
- 2)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 내용 및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.
- 3)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② 계약 목적

- 1) 지역사회와 신체적, 정신적 이유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방문요양(신체활동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, 정서지원, 인지활동지원) 방문목욕, 지역사회 연계 등의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2) 급여제공 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, 장기요양 급여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③ 계약 당사자

수급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수급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타사유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원 인수인으로 가족이나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수급자의 지정인 등을 계약 대리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다.

④ 급여 제공 시간
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상호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장기요양 급여 이용 변경사유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 이용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급여 제공시간 및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급여 제공 내용

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다.

- 1) 식사도움, 개인위생 관리(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 감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몸 씻기 등)
- 2) 이동도움(체위변경, 이동도움, 보장구 사용도움,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, 화장실이용하기 등)
- 3) 인지활동 지원(회상훈련, 기억력 향상활동,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, 일상생활 함께하기)
- 4) 인지관리지원(인지행동변화 관리 등)
- 5) 정서지원(말벗, 격려, 위로, 의사소통 도움 등)
- 6)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(식사준비, 설거지, 수급자의 생활공간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장보기, 산책, 생활물품 구입, 관공서, 병원 이용 동행, 그 외 외출 시 동행 등)
- 7)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

⑥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의 2(급여 외 행위의 제공금지)에 따라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와 같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)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: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, 빨래, 장보기, 청소, 김장, 제사준비, 명절음식 준비, 집안 경조사 지원,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 업무지원 등

2) 수급자 및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: 가게보기, 부업참여, 배달하기, 가게 청소, 가게 음식준비 및 설거지 등

3)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: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, 텃밭매기, 잔디 깎기, 수급자의 여행 등

⑦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1) 본 기관에서 급여 제공으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
2)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.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하며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
3) 급여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%와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%,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6%(보험료 순위 0~25% 이하), 9%(보험료 순위 25% 초과~50% 이하)등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.

- 급여비용 부담 세부내역 -

구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	6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또는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%

4)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5) 월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이용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관에서 정한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.

6)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,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방문 또는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(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)을 발부한다.

2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대리인)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

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1) 계약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권리
- 2) 기관의 급여 제공내용에 대한 알 권리
- 3)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욕구변화에 따른 상담 및 상담내용의 급여내용 반영을 요청할 권리

②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1)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2) 장기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의무(부당한 요구 금지 의무)
- 3)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
- 4)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(전염성 질환, 정신질환 보유여부에 대한 고지의무)
- 5) 수급자의 신변,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, 등급인정서 재발급,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이 재 발급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6)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

③ 장기요양 기관의 의무

- 1)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의 의무
- 2) 급여 제공 중 어르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
- 3) 급여제공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급여제공직원의 업무 수행도 확인 및 점검 의무
- 4)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개인정보 누설 금지의 의무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)
- 5) 이용관련 상담,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의무
- 6)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의무
- 7) 수급자의 가정 내 집기류 분실, 파손 방지 또는 수급자 부상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직원 교육 의무
- 8)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 (단, 수급자와 관계없는 요청은 거절 할 수 있음)

3. 계약의 해지

① 계약해지 요건

- 1)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
 -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(또는 보호자)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 - 기타 수급자(또는 보호자)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2)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거나 입원, 사망, 타 기관 입소한 경우
 -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-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-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급여 이용이 어려울 때
 -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지장을 줄 때
 -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외출 등의 사유로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,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
 -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6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
 - 그 외에 시설장이 급여제공 중단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할 경우

② 계약의 해지

- 1)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야 한다.
- 2)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(또는 보호자)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